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16

발의연월일: 2022. 8. 25.

발 의 자:정일영·강준현·김교흥

김병기 · 김승원 · 신현영

이성만 • 이용우 • 장철민

조승래 · 한준호 · 황운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류 이송 로봇 분야가 물류 산업의 전도유망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까지 수준 높은 배송을 보장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 분야에서 물류 이송 로봇의 발전가능성이 매우높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물류 이송로봇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산업의 발전 및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구체적으로, 현행법에는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이러한 로봇들이 도로를 사용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통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이에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 및 도로 횡단의 방법을 규정하여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적법한 범위에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1호의3, 제13조의3, 제13조의4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중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를 각각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3.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하고 차체 중량이 6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3(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 ①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보도 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보도로 통행할 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③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④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 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2. 보행자우선도로
- ⑤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 안전표지로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⑦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의4(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도로의 횡단) ① 생활물류서비스로봇 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

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 ②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 ③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8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u>자전거 및 개인형</u>	<u>자전</u>
<u>이동장치가</u> 통행할 수 있도	거, 개인형 이동장치, 생활물
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	<u>류서비스로봇이</u>
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u>자전거 및</u>	9 <u>자전</u>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	거, 개인형 이동장치, 생활물
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	류서비스로봇이
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 21의2. (생 략)	10. ~ 21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1의3.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

22. ~ 33. (생 략) <u><신 설></u> 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지능형 로봇 중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하고 차 체 중량이 6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 33.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 ① 생활물류서비스로봇 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보도 로 통행할 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서행하 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③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보도 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 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 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 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

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④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 물류서비스로봇은 고의로 차마 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 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 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2. 보행자우선도로
- ⑤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보도 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 다. 이 경우 생활물류서비스로 봇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 가 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 안전표지로 생활물류서비스

<신 설>

 로봇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

 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안전 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3조의4(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도로의 횡단) ① 생활물류서비 스로봇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 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물 류서비스로봇이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②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제10 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 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안전 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 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